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의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¹⁾

장승림²⁾ 유진수^{**3)}

*연세대학교 u-City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 **연세대학교 u-City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

A Study on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of u-City Operation Center

Seung Lim Kang, Jinsoo You
Yonse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E-mail : slkang716@yonsei.ac.kr, goodtree@yonsei.ac.kr

요약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U-Eco City 사업단 연구과제(과제번호:07첨단도시A01)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연세대학교 u-City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 책임연구원

3) 연세대학교 u-City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 연구교수/ 공간정보서비스 연구소, 소장